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31호
2. 발 의 자 : 김 경 의원
3. 발의일자 : 2018. 8. 30.
4. 회부일자 : 2018. 10. 1.

II . 제안이유

-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안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시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III . 주요내용

- 교통안전의 범위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포함함(안 제5조제4호).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안건 참고).

3. 기 타

입법예고(2018. 10. 5.~ 10. 15):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30일 김 경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31호로 발의되어 2018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안전의 범위 중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함으로써 교육안전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이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표1] 통학버스 현황(서울, 2018.12.3. 기준)¹⁾

구 분	통학버스 운행 시설수
유치원	622
학교	122
어린이집	2244
학원	1473
체육시설	1279
계	5740

- 정부는 이러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과 관련하여 어린이 승·하차시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3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

1) 학교안전공제중앙회(<https://schoolbus.ssif.or.kr/sb/index.html>) 참고.

를 통해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에 갇혀 사망에 이르거나, 안전띠 미착용으로 다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²⁾

[표2]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만 13세 미만) 교통사고(TAAS)³⁾

년도	사고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3	32	4	64
2014	31	2	55
2015	50	3	67
2016	38	1	59
2017	103	0	155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⁴⁾ 국회도 지난 10월 16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의무설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⁵⁾

2) 중앙일보, 반복된 찌통 통학버스 사고, 뒤만 돌아봤어도..., 2018.7.19

3)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koroad.or.kr) 참고.

4) 교육부, 어린이통학버스 실시간 위치알림으로 안전사고 예방, 2018.7.19

5) 교육부,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2018.9.3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또한 최근 국회에서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의안번호: 16685, 2018.11.20. 발의) 김한정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존의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여 관할청에서 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 모두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법령개정, 예산지원 등 다방면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안 제5조제4호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한 것은 교육안전 강화에 이바지하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개정 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73, 2018.11.12.).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1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